

시기와 방법 및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 조항을 보증채무에 대한 이자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보증채무는 이미 피고의 이행 청구를 통하여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원고는 이미 보증채무의 이행지체 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쟁점 조항을 보증채무에 대한 연 18%의 지연손해금 약정으로 해석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위 협정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원고가 주식회사로 전환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재판상 청구를 유보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2000년 11월경 작성된 약정서 제4조 제2항의 규정 또한 그 문언상 명백히 '보증금액의 초과' 등으로 인하여 쌍방 간에 소송 또는 이견이 있는 '미 변제금에 대해서만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정하고 있을 뿐, 보증채무 자체의 범위나 연체이율의 적용에 관하여 기존의 법률관계를 명시적으로 변경·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점, 피고가 위 관련소송을 제기한 것은 각 보증한도를 넘는 부분의 지급을 구

하려 한 것인바, 원고가 그 지급을 거부한 이유가 쟁점 조항의 해석에 관한 이견 때문이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미 이행한 금액까지를 포함한, 전체 보증채무의 이행범위에 관하여 위 관련 소송의 판결결과에 따르기로 약정한 취지로 보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쟁점 조항은 확정된 각 보증채무금에 대하여 별지 1의 보증금 청구일자란 기재 일자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토지매매계약상의 연체이율인 18%의 비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이해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원심은 관련 민사소송 확정판결의 이유 설시에 그대로 따른 나머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여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점을 지적하여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이유 있다.

4.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